상속재산 분할방법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최근 2개월 전에 아버지를 여읜 갑돌이는 상속문제 때문에 생긴 상속인들간의 불화로 속을 끓이고 있다.

상속인으로는 자신을 포함하여 3형제 및 출가한 누이 및 어머니가 계신다. 상속재산으로는 현재 어머니와 갑돌이가 거주하고 있는 33평 아파트 한 채와 시골의 전답 약간 및 현금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 2,000만원 정도이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상속 문제는 모두 어머니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출가한 누이이다. 누이는 만약, 자신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환산해 준다면 나머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한 금액과 유동자산 등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 해당분만큼 계산해 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갑돌이는 도저히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일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서 법에 호소를 하고 싶어 한다.

갑돌이를 포함한 형제자매들 4명과 어머니 등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머니가 1.5의 비율로, 갑돌이를 포함한 형제자매들 각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갑돌이의 누이의 경우도 나머지 형제들과 동등한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 2/11(누이 1/어머니 1.5+각 형제자매들 1 * 4)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

일단, 갑돌이와 그 형제들 및 어머니 등이 누이에게 제안한 내용은 상속재산을 전부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 갑돌이 누이의 지분인 2/11을 곱한 금액을 제공하고 그 누이로부터 나머지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포기 각서를 받으면 갑돌이와 그 형제들 및 어머니가 알아서 나머지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견해차가 있을 경우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협의분할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그 관할법원은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된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면 된다.

또한, 위 심판청구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분할심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잘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재량권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분할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동상속인들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이 방법을 채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물분할을,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경매에 부쳐 경락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PPFK